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 8. 25 선고 2020가단4246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원

담당변호사 정주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조지현

피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기

변 론 종 결 2021. 7. 21.

판 결 선 고 2021. 8.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 사이에 2017. 2. 26.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 8. 1. 접수 제4368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B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81051호)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1. 6. 16. “B은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신용보증기금에게 121,653,585원과 그 중 57,038,054원에 대하여는 1996. 2. 5.부터, 그 중 34,857,500원에 대하여는 1996. 6. 1.부터 각 1998. 1. 31.까지는 연 17%, 1998. 2. 1.부터 1998. 8. 31.까지는 연 25%, 1998. 9. 1.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20%, 1999. 1. 1.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2005. 6. 1.부터 2011. 3. 22.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1. 7. 5. 확정되었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2014. 9. 25.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채권양도사실을 2014. 10. 24. B에게 통지하였다.

다. B의 모친인 D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중 2017. 2. 26. 사망하였고(이하 D을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E, B, F, G 및 피고가 있었다.

라. B은 2017. 3.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2017. 4. 13.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느단136호).

마. B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2017. 8. 1.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바. 피고는 2017. 8.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2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3,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게 되었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악의에 기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B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속의 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비록 상속인인 채무자가 무자력상태에 있다고 하여서 그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를 쉽사리 인정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던 모든 재산적 권리 및 의무·부담을 포함하는 총체재산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서 다수의 관련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위와 같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좌우하는 상속포기의 의사표시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 자신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적용이 있다고 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그 법적 처리의 출발점이 되는 상속인 확정의 단계에서부터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것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상속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속의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구체적 판단

1) 살피건대, 망인이 2017. 2. 26. 사망하였고, 당시 망인의 상속인으로 자녀인 E, B, F, G 및 피고가 있었는데, B이 2017. 4.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느단136호로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고, E, F, G, 피고는 2017. 8. 1.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2017. 8.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 아니라 상속포기를 한 것인바,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피고는 상속을 포기한 B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인 E, F, G와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와 B 사이에 B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을 상속받지 않고 이를 피고가 상속받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B의 상속포기는 후행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전에 염두에 두고 한 것이므로 취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는 반면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그 법적 성질과 효력이 상이한 점, 상속포기는 적극재산이나 소극재산을 망라할 뿐만 아니라 상속인으로서 법률상 지위를 모두 포기하는 것인 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귀속만 정한 것이고 그 밖에 망인의 적극재산이 향후 밝혀지거나 알지 못하는 채무가 발견되는 경우 및 그 밖의 신분상 문제 등에 관하여도 협의한 것이라고 볼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B의 상속포기가 실질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상속포기는 채무자가 무자력이 아닌 경우에 국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인의 채권자 입장에서는 상속의 포기가 그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는 않는 점, 상속의 포기가 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와 아닌 경우를 나누어 보아야 하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아영